

수원지방법원 2023. 8. 9 선고 2022가단1199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3. 6. 21.

판 결 선 고 2023. 8. 9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울산 울주군 D 답 96㎡ 및 E 임 69㎡에 관하여, 피고 B은 원고에게 진입도로 사용승낙(건축허가를 위한)을 이행하고, 피고 C는 피고 B에게 진입도로 사용승낙(건축허가를 위한)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와 피고들은 울산 울주군 F 대 169㎡에 위치한 길(이하 ‘이 사건 도로’라 한다)을 이용하여야 하고, 피고 C는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울산 울주군 D 답 96㎡ 및 E 임 69㎡에 진입로(이하 ‘이 사건 진입로’라 한다)를 설치하였다. 원고는 피고 C의 이 사건 진입로 개설에 대하여 승낙하고, 피고 B은 이 사건 진입로를 울주군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여,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진입로 사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는데, 피고들이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지 않아 G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,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여야 한다.

2. 판단

살피건대,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진입로의 사용과 관련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,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고, 청구취지와 같은 사용승낙을 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,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경록